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012. 2. 24.)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목]

【목 차】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	---

<의안번호 제2012 - 5호>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2. 13.
- 나. 제 출 자: 강철우 · 강창남 · 이애숙
- 다. 회부일자: 2012. 2. 14.

2. 개정이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의거,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종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시 화장한 경우에서, 타지역에 연고를 둔 미혼자 및 군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대해서도 화장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 특히, 화장후 자연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유도함은 물론 국토의 잠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안 제3조)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거창군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제외 대상 (안 제4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사태(死胎) :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기준 (안 제5조)

- 화장 장려금은 사망자 1인당 30만원으로 하되,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 개장 후 화장장려금은 10만원까지 지급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8조)

-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함

다. 합 의(검토)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법적검토(위배사항 없음)
- 주민자치지원실 : 일부 검토의견 반영

라. 입법예고(2012. 2. 14. ~ 2. 20.)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안은 현재 군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이, 우리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미혼자인 경우와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연고자에 대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 특히, 도내에서도 우리군의 화장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 화장 장려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 시키고, 화장 후 자연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유도하여 국토의 잠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 이 개정 조례는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화장률을 제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7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8호 시행일 2012.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④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립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2.2.1><중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2.2.1>

- ④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2.1><제3항에서 이동, 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2.2.1>
- ⑤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중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2.2.1>
 -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⑥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에서 이동, 중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2.2.1>
- ⑦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제6항에서 이동 2012.2.1>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1.5.30 대통령령 제22945호]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개정 2010.12.29, 2011.5.30>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